大田直轄市 教育費 特別會計 所管 公有財産 管理 條例中 改正 條例案

審査報告

1992年 7月 28日 文教·社會委員會

1. 審 査 經 過

가. 提案日字 및 提案者: 1992年 6月 30日, 大田直轄市 教育監

나. 回 附 日 字: 1992年 7月 4日

다. 上程日字:第12回 大田直轄市議會(臨時會)

第3次 文教・社會委員會 (1992. 7. 23)

上程,審查,議決

2. 提案說明의 要旨(提案說明者:財務課長)

小 提 案 理 由

公有財産의 貸付(使用)料 算定을 위한 財産 評價額을 課稅時價標 準額에서 公示地價로 一元化함에 따라 一部 地域의 貸付(使用)料 가 急激히 上昇하여 使用料 負擔이 一時에 높아지는 問題點을 改善하기 위함.

나. 主要骨子

○ 90年 使用料 體系 改編以後 使用料 算出額이 前年度보다 10% 以上 增加한 境遇에는 그 負擔이 急增하지 않토록 이를 段階的으로 下向 調整함. (案 第23條의 2條)

増	加比	; 率	調整比率
20% 50% 100%	상 - 2 상 - 5 상 - 10 상 - 20 상 - 50 上	50% 미만 90% 미만 90% 미만	10% 이상 - 13% 미만 13% 이상 - 16% 미만 16% 이상 - 19% 미만 19% 이상 - 22% 미만 22% 이상 - 25% 미만 25% 以上

3. 專門委員 檢討 報告 要旨 (專門委員:金鎭鎬)

이 改正 條例案은 公有財産의 評價額 算定基準이 지난 1990. 11. 地方財政法 施行令의 改正으로 課稅 時價 標準額에서 公示 地價를 適用토록 됨에 따라 一部 地域에서의 貸付(使用)料가 急激히 上昇 하는 불합리점이 發生되므로 이를 段階的으로 緩和토록 하고자 하 는 內容으로써

現行 大田直轄市 教育費 特別會計 公有財産管理 條例에 의한 公有財産의 貸付(使用)料 算定 基準은 當該 財産 評定價格 즉, 當該財産 公示地價의 100분에5로 算出토록 規定하고 있음.

그러나 本 算出基準은 地方財政法 施行令의 改正 以前(1990年 11 月 以前)인 課稅時價 標準額 基準時 算出額보다 월등히 높은 효과를 가져와 使用者들의 經濟的負擔을 加重시킴은 물론 民願의 對象이 되어 왔음.

따라서 이러한 不合理 점을 解消하기 위하여 政府에서는 지난 1991. 12. 31. 前年度 使用料보다 10%以上 增加한 境遇 이를 段階的으로

下向 調整할수 있도록 國有財産法 施行令 第26條의 2를 追加로 新設하였으며, 本 條例案 역시 이에 맞춰 關聯 條項을 改正하려는것으로써 별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思料됨.

- 4. 質疑 및 答辯 要旨: 없 음
- 5. 討論要旨: 없음
- 6. 小委員會 審査 報告 要旨: 없 음
- 7. 少數 意見 聽取: 없 음
- 8. 審 查 結 果: 原案대로 可決함.

- 9. 體系字句審查內容: 없 음
- 10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